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 A Curr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이장원\*, 임지원\*\*

대전보건대학 방송제작과 · 주)스타LVS CEO\*, 국제대학 철도전기공학과\*\*

Jang-Weon Lee(jwlee02@unitel.co.kr)\*, Jee-Weon Im(jwim@kookje.ac.kr)\*\*

### 요약

문화예술의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적인 과제로 부각되었고, 국민의 문화욕구가 증가하면서 공연예술도 대형화와 전문화로 인해, 대형 뮤지컬의 제작 편수가 많아지고 외국과의 공연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무대기술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공연장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공연을 위한 무대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무대기술 분야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 공연장과 공연 예술의 질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자격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예술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무대예술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과 무대기술 분야 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첫 자격제도로서,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와 걸맞은 운영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문화예술 | 예술전문인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 |

### Abstract

Along with hardware implementation of cultural arts,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and securing professionals who are able to operate and manage it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is highlighted as a political issue. In addition, with growing public demand for culture, performing arts are enlarged and professionalized, and this increased the number of large-scale musicals and activated exchanges with overseas performances, which raised the demand for personnel of performing technology. Like this, growing theaters require professionals in the performing technology field for technically safe and quality performance.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is to develop quality of theaters and performing arts by increasing vocational professionalism and safety in the performing technology field. This system performed since 2000 is getting positioned, and employees who worked for the performing technology field at this time showed a lot of attentions with certainty they would receive credit for artistic professionalism and raise pride as a performing arts professional. However, the government's political strategy to secure professionals of cultural arts and interest in human resource(HR) policy in the performing arts field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by looking into actual conditions regarding operation and role under the initial purpos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purposed the improvement plan as a first certification system to cultivate Korean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 keyword : | Cultural Art | Art Expert | Stage Equipment | Stage Lighting | Stage Sound |

## I. 서론

문화예술의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적인 과제로 부각되었고, 국민의 문화욕구가 증가하면서 공연예술도 대형화와 전문화로 인해, 대형 뮤지컬의 제작 편수가 많아지고 외국과의 공연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무대기술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공연장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공연을 위한 무대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었다.

1995년 무대예술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계획수립에 대한 의무조항이 「공연법」에 처음 등장하였다. 1999년 「공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예술 부문에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인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무대기술 분야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 공연장과 공연 예술의 질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자격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예술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무대예술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2009년 말 현재로 2,072여명의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되었으나, 정부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과 무대기술 분야 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변화하는 사회와 공연환경에 맞는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1][4].

## II.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운영현황

### 1. 무대예술전문인의 정의

법제도 내에서 무대예술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규정이 생긴 것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1995년 12월 29일에 공연법 제25조의5를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프로그램 기획·조명·음향·무대기계 등과 관련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무대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처음 포함시켰다.

이때 “무대예술전문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이 현재 자격제도의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사용된 “무대예술전문인”은 포괄적인 직업군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무대예술전문인”이라는 용어는 1999년 공연법이 개정되어 “공연예술 지원인력”으로 바뀌면서 인력 양성 범위가 확대되고,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명칭으로 “무대예술전문인”이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무대예술전문인”이라는 용어는 본격적으로 “무대기술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연법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연법 제14조 제2항에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 종류와 급수가 명시되어 있어 그 종류와 급수만 알 수 있는데,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자격 종류별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2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에서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제도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명, 음향, 무대미술, 무대기계 분야의 자격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통적인 의견은, “업무의 특성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예술성이 요구되는 기술이므로 기술자나 기능인이 아니라 예술인 내지는 예능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뷰 응답자가 자격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예술성 때문에 “기술자격증”이라는 용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와 기술인(technician)의 역할이 나누어진 것은 일부 대형공연에서만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공연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이 디자인과 기술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연법에서 말하고 있는 “무대예술전문인”은 박민호가 얘기하는 무대예술전문인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1) 무대기계전문인

무대기계기술이란 공연시설의 구조물에 설치된 무대 기계를 원숙하게 다루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극이나 음악공연 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대를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키거나, 막대에 설치된 각종 막을 움직이는 기계들은 하드웨어로 볼 수 있으며, 무대, 막, 각종의 무대 미술장치 등은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다. 무대기계전문인은 하드웨어를 예술적으로 원숙하게 적절히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2)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조명은 무대 위에 빛을 제공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의 볼 곳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시간, 계절, 장소 등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한 무대 위의 사물이나 배우를 입체적으로 또는 평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극의 분위기 전환이나 무대장치의 전환 등 공연작품에 리듬을 주기도 한다.

무대조명은 조명기술 분야와 조명디자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조명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보, 조명 감독, 조명스태프·조명크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무대음향전문인

음향이란 소리의 울림을 말한다. 음(音)은 물체의 진동을 청각이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물체의 진동이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을 통하여 청각에 전달되어 감지할 때 음을 듣게 된다. 이러한 물체의 진동을 가공 처리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진동으로 바꾸어주는데, 필요 없는 음을 제거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출력으로 바꾸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무대음향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격제도의 도입배경

대부분의 공연장들은 국·공립 공연장으로써 공연장의 무대기술 분야의 근무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연장으로 발령을 받아오거나, 다른 기술 분야(전기, 전자, 통신, 열관리 등)로 취업한 후 무대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따라 다른 부서로 옮겨가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풀이 되면서 무대기술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전문 인력의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2][6].

3. 자격제도의 개요

1) 자격제도의 개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무대예술전문인은 공연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로 나누어지고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1. 공연법 제14조

<p>제14조 (무대예술전문인)</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p> <p>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공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1999년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도 시행준비단이 발족되어 검정과목 및 기간, 검정방법, 교재개발, 시행세칙 등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월 한국예술

종합학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4년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이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검정기관은 공연법 시행령 제15조와 시행규칙 제6조 11에 의거하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 자격검정의 방법

가. 응시기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에 의한 학력증명서, 실무경력인정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전에 실무경력인정을 받아야 한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3급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법에서 정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급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2급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처럼 3급부터 단계별로 승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검정시험 실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험은 공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 무대예술 관련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 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도 있다.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해야 한다. 1차 이론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 자격검정 1차(필기)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개정 2006.12.29 제13조 5항 관련>

구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시험과목	배점	과락	시험과목	배점	과락	
무대예술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20	8	무대기계 I, II, III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30	12	무대기계 I, II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40	16	무대기계 I	60	24
무대조명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20	8	무대기계 I, II, III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30	12	무대기계 I, II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40	16	무대기계 I	60	24
무대향문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20	8	무대기계 I, II, III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30	12	무대기계 I, II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대기술일반	40	16	무대기계 I	60	24

2차 실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 [표 1-3]과 같다. 실기시험의 평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 3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각각의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평가표에 의하여 채점한다. 평가는 응시분야 장치 및 설비의 운용 및 조작능력,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판독능력 및 조처능력, 조작능력의 수월성 및 완벽성, 장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장비 및 장비 운용상의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표 1-3. 자격검정 2차(실기)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구분	시험과목	배점	합격 결정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1급 무대기계 I, II, III	100	60
	2급 무대기계 I, II	100	60
	3급 무대기계 I	100	60
무대조명 전문인	1급 무대기계 I, II, III	100	60
	2급 무대기계 I, II	100	60
	3급 무대기계 I	100	60
무대음향 전문인	1급 무대기계 I, II, III	100	60
	2급 무대기계 I, II	100	60
	3급 무대기계 I	100	60

다음 [표 1-4]와 같이 지정된 교육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교육 이수시간을 수료하면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해 주었다. 교육과정 이수자는 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등급에 자격검정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날짜 이후의 개설된 과정만 인정이 가능하다.

표 1-4. 지정 교육기관

교육기관 개설자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지정일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무대예술 아카데미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09.11.25
학교법인 계원학원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00. 6.10
학교법인 우암학원	전남과학대학 (모델연기연예과)	무대조명, 무대음향	'00.10.17
나주대학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학부 무대예술제작전공)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02.12.13

① 검정합격인정에 대한 규정

‘검정합격인정’이라 함은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 검정기관으로부터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월 현재 실무경력이 있고 해당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언제나 경력에 의한 검정합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표 1-5. 공연법 개정 전 검정합격 인정기준

등급	공연장 종사자	공연업 종사자
1급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50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2급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35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3급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② 교육과정 미 이수자에 대한 규정

법 개정 전에 실무경력인정을 받지 않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도 아니고 검정합격 인정기준의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분야에 대한 종사경력이 있으면 동일하게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아 자격검정에 응시가 가능하다.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고 2년제 또는 4년제 교육과정, 즉 관련학과를 이수하면, 이수시간의 2분의 1인 1년 또는 2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앞의 응시기준에 상관없이 자격검정에 응시가 가능하다.

표 1-6. 공연법 개정 전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기준

등급	교육과정 미 이수자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라·통신 직무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급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3급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비고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외국의 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시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III.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현황과 문제점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현황

1) 자격종류별·급수별 취득 현황

2000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로 자격검정시험과 실무경력에 의한 합격인정을 통한 분야별 자격증 취득자 수는 2007년 12월 현재 총 1,555명이고, 2009년 12월 3일까지는 2,072명이다.

2008년 2009년 까지 다음과 같다.

표 2-1. 자격종류별·급수별 취득자 현황

구 분	계	무대 기계	무대 조명	무대 음향	
1급	시험합격	153	39	65	49
	합격인정	201	73	73	55
	소 계	354	112	138	104
2급	시험합격	247	64	104	79
	합격인정	293	108	109	76
	소 계	540	172	213	155
3급	시험합격	352	87	142	123
	합격인정	309	124	104	81
	소 계	661	211	246	204
계	시험합격	752	190	311	251
	합격인정	803	305	286	212
	소 계	1,555	495	597	463

\* 자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2007년 12월 현재

위의 [표 2-1]를 보면 무대조명과 무대음향의 경우 시험합격자가 각각 311명, 251명으로 각 286명, 212명인 합격 인정자 수 보다 많은 반면에, 무대기계는 시험합격자가 190명으로 합격 인정자 305명의 3분의 2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대조명과 무대음향은 공연업 종사자라고 통칭할 수 있는 렌탈업 종사자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공연장 종사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무대기계 분야는 필요할 때만 외부 인력을 쓸 수 없는 분야의 특성상, 비교적 오랜 기간 공연장에 종사한 사람이 많으며 합격인정 받기도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무대음향 분야보다 전체적으로 취득자 수가 많은 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무대장치 제작업체의 무대장치 분야 종사자를 포함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 공연법이 개정되기 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에 응시하는 것에 있어 단계별로 승급해야하는 과정이 없었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승급과정이 없이 응시기준에

만 부합하면 바로 2급이나 1급에도 시험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동일인이 두개 이상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 자격증 취득자는 통계치보다 적을 수 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시험합격 및 합격인정수는 파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체 종목별은 다음의 표와 같다.

2) 검정방법에 따른 취득 현황

검정방법에 따른 연도별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과 2001년에는 실무경력자들의 집중적인 응시지원으로 합격 인정자가 각각 201명, 151명이 배출되었으나 2002년에는 59명, 2003년에는 64명으로 점점 합격 인정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은 평균 7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는데, 2005년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시행을 앞두고 미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종사자들이 응시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도 합격 인정자 수가 84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은 검정합격 인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앞두고 기한 내에 취득하고자 하는 심리 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4년에 자격 검정기관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국립극장으로 전환되고, 시험합격자와 합격 인정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각 2.5배, 1.5배씩 늘었다. 이는 새로 지정된 검정기관인 국립극장에서 의무배치 인력수급을 우려하여 합격자 수를 늘린 까닭이다. 2000년에는 자격시험 3급만 시행되었으며, 2005년도에 검정시험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 자격시험을 2회 시행했기 때문이다. 2005년 검정시험 합격자는 그 이전과 비교하면 평균 3배가 넘는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표 2-2. 검정방법에 따른 연도별 취득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시험 합격	61	65	73	49	126	245	46	87	752
합격 인정	201	151	59	64	108	77	84	59	803
계	262	216	132	113	234	322	130	146	1,555

\* 자료 : 문화관광부(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자료), e-나라 지포에서 재인용

2.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현황

공연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중에, 객석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의무적으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 별로 기준이 적용되며, 다음에서 보는 [표 2-3]의 배치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않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

표 2-3.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

배치대상 공연장	무대예술 전문인등급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1천석 이상	1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인	1인	1인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급수별 배치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21)에 따르면, 조사한 전국 296개 공연장 시설의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 소지자는 160명으로 전체 인력의 11.9%, 2급 자격증 소지자는 290명인 21.7%, 3급 자격증 소지자는 265명인 19.8%로 전체 인력 중 자격증 소지자는 절반가량이었으며, 자격증 미취득자는 전체 인력의 46.6%이었다.

표 2-4.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급수별 배치현황

구분	공연장수	1급	2급	3급	미취득자
계	296	160	290	265	623
서울	92	70	90	62	191
부산	17	20	25	21	60
대구	9	8	3	16	31
인천	20	4	19	19	26
광주	10	-	-	9	19
대전	9	3	6	11	35
울산	2	12	3	4	8
경기	32	27	35	38	61
강원	17	-	9	8	25

충북	11	-	9	-	46
충남	12	4	10	9	17
전북	15	4	23	9	25
전남	10	7	2	16	9
경북	16	2	21	8	15
경남	17	7	17	12	27
제주	7	5	7	2	26
특별/광역시	160	110	134	147	382
광역시도	136	54	141	113	243
공공	187	108	240	200	433
민간	109	51	49	64	190

급수별 자격증 취득자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무대예술전문인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광주, 강원, 충북은 1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못했다. 또한 대상 공연장의 배치인원의 40.5%, 공연장의 49.25%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급수별 자격증 취득자 수가 1급이 326명, 2급이 499명, 3급이 584명인 것에 비하면, 실제 공공 공연장에 배치되는 비율은 1급의 33.1%, 2급의 48.1%, 3급의 34.2%만 배치되었다.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기준이 각 자격종류별 1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공공 공연장 수가 187개 이므로 561명이 필요하지만 1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자격증 취득자 수가 2006년 12월말 현재로 1,409명이므로 배치대상 인원대비 자격증 취득자 수는 충족하였으나, 의무배치 대상 공연장의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표 3-4]와 같이 자격증 취득자가 민간 공연장에 근무하거나 배치되고 있는 것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 공연예술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종류별 배치현황

무대예술전문인을 자격 종류별로 살펴보면 무대조명이 전체 인력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무대기계 32.9%, 무대음향 28.1% 순이었다. 공공 공연장에 배치된 인력은 자격증 취득자 수에 비례하여 무대기계는 74.5%, 무대조명은 63.3%, 무대음향은 72.5%가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 취득자 수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종사자 인원만을 봤을 때, 공공 공연장의 경우 187개 공연장에 필요한 인원이 각 분야별 1명씩, 최소 561명이라고 본다면 인력의 수는 981명으로 이미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5.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종류별 배치 현황

구분	공연장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계	296	440	521	376
서울	92	124	185	104
부산	17	27	69	29
대구	9	22	19	17
인천	20	26	30	13
광주	10	3	17	8
대전	9	23	16	16
울산	2	10	15	3
경기	32	51	49	63
강원	17	10	17	15
충북	11	6	25	25
충남	12	12	13	14
전북	15	33	19	8
전남	10	13	16	6
경북	16	26	11	10
경남	17	15	27	22
제주	7	18	9	14
특별/광역시	160	235	346	192
광역시도	136	193	188	171
공공	187	333	344	304
민간	109	106	178	70

\* 문화체육관광부,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p142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충족이 되었을 뿐, 각 지역별 공연장 수와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분야별로 인력이 배치기준에 넘거나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2-6]을 보면,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은 객석이 1천석이 넘으므로 분야별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무대기계는 7명, 무대음향은 2명으로 의무배치 기준에 초과 배치되어 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도 객석이 1천석이 넘으므로 각 분야별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 1명씩 배치가 되어야 하나무대기계 분야에 해당급수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상황이다. 앙상블홀은 500석 이상 800석 미만이므로 분야별 3급 이상 소지자가 1명씩 배치되어야 하는데, 무대기계는 3급이 3명, 무대조명은 2급이 2명 배치되어 있다. 안양문예회관 대공연장은 무대기계 분야의 근무자는 있으나(괄호의 숫자)1급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며, 평촌아

트홀은 무대조명 분야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표 2-6. 지역별 공연장 의무배치 현황

구분	객석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급수	인원	급수	인원	급수	인원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1,522석	1	7	1	1	1	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340석	1	1	1	1	1	1
		2	1	2	3	2	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596석	3	2	3	3	3	1
		1	1	1	1	1	1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675석	3	3	2	1	2	1
		3	3	3	3	2	1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	1,552석	1	0				
		2	2	1	1	1	1
대전문화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655석	3	3	3(2)	2	3	1
안양문예회관 대공연장	1,127석	1	0(1)	1	1	1	0
안양문예회관 소공연장	527석	3(2)	1	3(2)	1	3(2)	1
안양 평촌아트홀	638석	3(2)	1	3	0	3(2)	1

\* 자료 : 문화관광부, 2006년 12월말 현재. 괄호는 실제 배치 급수와 인원

한편 예술의전당에는 의무배치 기준에 해당되는 3개의 공연장에 법적기준보다 초과하여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무배치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공연장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3-5].

### 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문제점

#### 1) 자격명칭 논란

“무대기계전문인” 명칭을 두고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첫째는 “무대장치전문인”과 “무대기계전문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무대기계·장치전문인”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경수는 자격명칭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무대기계와 무대장치는 모두 한 가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 분리된 전문기술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가지 명칭을 합치는 것보다는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 공연장에서 무대장치 분야 담당자를 필요로 하는 공연장은 국내에 극소수이다. 우리나라에서 무대장치 분



야 업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공연장은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으로 손에 꼽히고 있다. 따라서 무대기계와 무대장치를 분리하여 의무배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무대장치 경력자가 무대기계전문인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공연장에 채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2) 자격기준 문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은 교육과정 이수자와 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응시기준과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기준, 검정합격인정에 대한 문제였다.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 2007년 1월 1일 현재 기준 규정에 따른 응시기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7년 1월 1일 전까지 실무경력이 있더라도 법 개정 전의 응시기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응시 자격이 없는 것이다.

### 가. 자격검정 응시기준의 문제

기존의 공연법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 본 [표 1-4]과 [표 1-8]과 같이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을 정해 놓았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격이 인적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자격검정 응시기준은 배출된 자격자의 기술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인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 개정으로 승급과정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자격증의 질을 높이기 위해 3급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실무경력이 없어도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하되, 하위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실무경력 기간을 요한 후 상위 급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 나. 검정합격인정제 문제

검정합격인정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실무경력만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시행초기에 이미 공연장에서 무대기술 스태프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

였다. 자격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는, 원래 2002년에 의무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국·공립 공공 공연장에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배치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만큼의 인력이 필요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필요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일해 온 이들에게 시험을 잘못 치렀다고 하루아침에 쫓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무대작업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무대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연예술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자격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자격은 개인이 어떠한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신호기체로서 학력을 보완하거나 대비되는 능력지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을 수여할 경우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자격의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득권 인정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인력 양성의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의 질을 높이고 시험을 통하여 취득한 자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정합격 인정제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과 조치 규정을 둬으로써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 다. 실무경력 인정기준 문제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공연법에서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공연장 종사자와 공연업 종사자로 나누고 있다. 공연장 종사자는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공연업 종사자는 검정기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연 90일 이상 장기공연 작품에 2개 이상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장 종사자의 경우, 우리나라 공연장의 편차가 심해서 공연장에 대한 구분 없이 근무 기간만으로 경력을 인정하게 되면 심한 불균형을 낳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공연장의 경우 아직까지도 공연다

운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오르는 공연장이 그리 많지 않아 학예회 발표나 시상식, 세미나 등 행사 위주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공연업 종사자의 경우 공연장의 종사자가 소속 공연장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 것과 달리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작품의 수나 공사경력으로 실무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예회관 확충 사업으로 2011년까지 개별 지방자치단체 당 1관씩 250관을 목표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공연장 건립이 증가하고 기공연장의 자체 리모델링 공사 내지는 보수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연장 공사의 특성상, 공연작품 인정기준을 공사 참여 경력자에 일반적인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5개 이상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표 2-7. 공연업 종사자의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p>제 11조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p> <p>영 제 13조의2와 규칙 제 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3호의 3서식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공연업 종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이력서</li> <li>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해당자에 한함)</li> <li>3. 별표2및 별표2의3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업무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 (공연명, 기간, 장소, 주최, 출연진, 담당업무 등을 날짜순으로 기재한 후 컴퓨터 기록 매체로 첨부)</li> <li>- 참여한 작품에 대한 공연단체장(주최, 제작, 기획사 대표 혹은 공연장 대표)및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 확인서</li> <li>- 제작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해당</li> </ul> </li> </ol>
--

<p>업무책임자의 성명이 명기된 공연프로그램, 공연홍보물, 보도기사, 공연평 등의 인쇄물 또는 작업(업무)일지, 도면, 사진, 비디오 등 기타 증빙자료</p> <p>4. 규칙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 관련학과 졸업 또는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p>
---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공사경력을 각 자격종류별 인정대상 업무분야로 인정이 가능한지, 공사 참여자를 무대예술전문인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의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기기 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운용은 가능하겠지만, 공연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공연작품에 대한 이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표 2-8. 공연작품 인정기준 및 경력인정 기준

<p>제 13조 (공연작품 인정기준)</p> <p>공연업 종사자가 영 별표2의3 및 별표2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에 참여한 작품의 수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작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실무경력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연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무대기계, 조명, 음향 설비가 갖추어진 공연장 (비 상설 야외공연장에서의 공연도 포함)에서 공연된 작품</li> <li>2.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비전문 예술인 포함)의 작품</li> <li>3. 공연의 목적과 양식, 내용이 상품의 판매 또는 선전 등 특정 대상의 홍보를 위한 공연이 아닌 작품</li> </ol> <p>② 자격검정 합격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연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무대기계, 조명, 음향 설비가 갖추어진 공연장에서 공연된 작품</li> <li>2.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예술인의 작품</li> <li>3. 공연의 목적과 양식, 내용이 상품의 판매 또는 선전 등 특정 대상의 홍보를 위한 공연이 아닌</li> </ol>
---

작품
<p>제 14조 (경력인정 기준)</p> <p>① 무대기계 상하부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및 무대장치 전환 분야이어야 한다. 단, 무대설비 및 무대장치의 설계나 제작에 참여한 경우 검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p> <p>② 무대조명 무대조명의 디자인, 조명기기 설치, 콘솔 입력/제어, 공연 중의 조명기기 조작/전환 분야이어야 한다. 단, 무대조명 시설의 설계/제작에 참여한 경우 검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p> <p>③ 무대음향 무대음향 기기의 작동, 설치, 조정(오퍼레이팅), 보수와 녹음 및 편집 작업, 음향기기 설치 및 조정을 위한 디자인, 음향 큐시트(녹음과 확성)등의 문서와 그 디자인 작업, 음향 제작 분야이어야 한다. 단, 무대음향 시설의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한 경우 검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p>

앞의 [표 2-6]을 보더라도 제출서류 구비조건을 명시해 놓은 자격검정 시행세칙 내에는 공사 참여경력과 관련한 조항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또한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4조에서는 공연업 종사자의 공사참여 업무분야로 보이는 경력인정 기준 단서조항을 볼 수가 있는데, “검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라며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인정기준과 시행세칙은 서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 3) 의무배치에 대한 문제

무대예술전문인의 의무배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권을 제외하고는 전문 인력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2,072여명이 넘게 배출되었으나 공연장에 배치된 자격자가 부족한 이유는, 동일인이 승

급을 거치면서 1~2차례 중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자는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급된 자격자들 중 대부분이 현직자가 경력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대예술전문인의 현장 배치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의무배치 인원 기준이 3급은 각 자격종류별 1인, 2급과 1급이 각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고용자 입장에서는 법정 배치인원이상 보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교육 등으로 인해 휴가를 얻으려 해도 대체 인력 부족으로 설 수도, 자기 개발을 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자격증 취득이 자신의 전문성에 공신력 있는 인정을 받기 위한 개인적인 동기부여에서라기보다 외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이뤄진 것임이 다수였다. 즉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기에 있어서는 자격증에 특별히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현재 극장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미래를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서, 또는 극장에서 일하기 위한 의무조항이 되다보니 반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응답자는, 자격증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무대예술전문인의 이직이 더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자격제도의 기능측면에서 보면 자격증 취득으로 더욱 넓은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획득하였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공연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공연장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무대기계 분야의 경우 무대장치 경력자와 섞여 있어, 실제 공연장에 채용되어 바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오히려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해야 하는 공연장의 구인난은 심해지고 있다.

극장에서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자격증에 대한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프리랜서는 취업이 수월해지리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 과연 극장에서 일하는 것과 무대기술 인력으로서의 전문성 인정이 어느 정도의 연관을 맺을지는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

#### IV.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운영 개선 방안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문제점은 자격제도의 운영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격명칭에 대한 문제와 자격기준의 문제는 결국 자격제도의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제도의 정비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4][5].

##### 1. 자격제도 운영 체계의 개선

###### 1) 자격명칭의 분리 및 명확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450명, 자격제도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등 집행 공무원 10명, 공연장 관계자 및 공연업계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자격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의 63.6%가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자격증 종류 세분화에 대한 의견

조사대상자	종류 세분화	종류 유지	기타
전체(600명)	56.0%	43.7%	0.4%
자격증 소지자(450명)	63.6%	36.0%	0.4%
공연장 종사자 및 업계종사자(150명)	33.3%	66.7%	0.0%

\* 자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2007, 연구자 재구성

표 3-2. 자격증별 자격증 종류 세분화에 대한 의견

구분	사례수(명)	종류 세분화	종류 유지	기타
전체	450	63.6%	36.0%	0.4%
무대기계	136	72.1%	27.2%	0.7%
무대조명	185	60.0%	40.0%	-
무대음향	127	59.1%	40.2%	0.8%

\* 자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2007, 연구자 재구성

자격증 소지자 중 무대기계전문인의 경우, 응답자의 136명 가운데 72.1%가 시험 종류의 세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대기계와 무대장치 자격 분리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자격증 종류 세분화에 찬성한 응답자 287명 중 91.3%가 무대기계와 무대장치의 분리 의견에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무대기계전문인 자격증 소지자의 10.2%가 분리하는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표 3-3. 자격증별 무대기계 및 무대장치 분리 의견

구분	사례수(명)	분리찬성	분리반대	무응답
전체	287	91.3%	7.0%	1.7%
무대기계	98	87.8%	10.2%	2.0%
무대조명	111	95.5%	3.6%	0.9%
무대음향	76	90.8%	6.6%	2.6%

\* 자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2007, 연구자 재구성

실제로 무대기계와 무대장치가 분리되어 채용되는 공연장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공연현장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무대기계와 무대장치가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업무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을 분리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대기계와 무대장치에 대한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으로 두 분야의 의견대립에서 오는 입장 차이를 정리해 나가야 하며, 분리하는 시기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2) 검정합격인정제 폐지

『자격기본법』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열어놓은 것이므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자격제도의 흐름이 개인의 능력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격증에서 무시험제도 등은 없어지고 있다. 검정합격인정제의 경우도 다소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

되더라도 장기적인 인력양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과조치란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 구법에서 신법으로 즉시적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조정을 위해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합격인정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합격인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검정합격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실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정합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실기를 통해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실무경력이 있으면서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응답자는 검정합격인정제는 존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2007년 말 현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1,555명 중 51.6%에 해당되는 803명이 검정합격인정을 받았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검정합격인정 신청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과조치 규정으로도 남겨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5][6].

### 3) 실무경력 인정기준 개선

공공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비해 민간 공연장, 예술단체, 렌탈 업체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공 공연장의 경우, 업무 분장표가 있어 해당 분야의 경력 증명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민간 공연장, 렌탈업체 근무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을 증명하기 어렵다. 다행히 최근에는 공연 프로그램에 공연 제작에 참여한 무대기술 인력 명단이 기록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공연장 종사자와 공연업 종사자 간의 형평성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공연업 종사자의 실무경력 산정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연간 5개 이상 작품에(공사 포함)참여했을 경우를 1년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업 종사자의 경우 공연 중간에 참여하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 등에 이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명이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장기공연의 경우 계약사항

의 여부에 따라 기술 인력이 중간에 교체되는 사례가 많아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공연업 종사자들의 실무경력 산정 기준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하고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연업 종사자가 공사에 참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무경력 인정기준과 제출서류 요건이 서로 배치되어 공사에 참여한 경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해당자는 그 준비가 힘든 현실이다. 2002년에 공연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있어 응시기준을 개선하고 응시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때부터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공연업 종사자의 인정기준에 공사를 포함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규정하고 어느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출서류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행세칙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우선, 공사를 포함한 실무경력이 응시기회의 확대인 지, 공사 참여 경력을 무대예술전문인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제도가 목적하는 예술성의 제고와 공연작품의 질 향상과 공연장의 안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 참여하는 경우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방법과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경력 응시기준에 대한 신중한 재고려와 용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 2. 자격증 취득자 사후관리

### 1) 자격증 갱신 제도 도입

일반적인 자격검정 운영 절차의 결과로서 업무에 적합한 인력이 배출되고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평가를 통해 그 적절성이 검토되고, 그 검토결과는 다시 자격관리체제 전반에 전달되는 순환과정을 통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격제도에서는 자격증 유효기간의 설정 또는 갱신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의 갱신은 단순히 당초 자격을 받을 때의 수준을 시간이 지나는 동안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소지자가 새로운 경력으로

추가해야 할 지식이나 기술,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격증 갱신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격증 취득자의 계속 교육, 현장경력, 자기 평가, 재검정 등이 있는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에서는 이미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속교육을 통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자격증 취득자 재교육

무대기술은 새로운 하드웨어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날이 발전하고 있다. 수십 년간 정체되어 온 무대기술로는 날로 대형화,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의 공연 제작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2004년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공연장 및 외부제작업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찬성하였다. 신기술의 습득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의 조사에서도 자격증 소지자의 재교육에 대한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84%, 자격증 소지자의 87.1%가 교육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연장 종사자 및 공연업 관계 종사자의 72%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재교육을 권장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표 3-4. 자격증 소지자 재교육에 대한 의견

구분	참여 의향	불참 의향	무응답	계
전 체(550명)	84.0%	13.0%	3.0%	100.0
자격증소지자(450명)	87.1%	12.9%	-	100.0
공연장 종사자 및 업계 종사자(100명)	72.0%	13.0%	15.0%	100.0

\* 자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2007, 연구자 재구성

그러나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함에 있어 교육기간

과 장소, 시간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방의 경우 최소 인원이 배치되어 근무할 경우 대체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무대예술전문인 종사자들도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으로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이 유일한데, 4일간 총 31시간 교육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 종사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공연장을 비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방 종사자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기간은 5일에서 1주일 또는 2주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 3. 법 제도의 정비

#### 1)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기준 개선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공연예술의 발전과 작품의 완성도 제고, 그리고 인력양성의 측면도 있지만 공연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공연작품의 질적 향상과 완성도 제고, 공연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법에서 정하는 실력과 지식을 겸한 최소한의 인력이 공연장에 배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건축된 중소 공연장의 경우 시설의 설비 등 하드웨어시스템이 매우 복잡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무대예술전문인의 기술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 공연장의 경우 간혹 객석 규모는 크나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는, 사실상 강당에 불과한 시설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시설만을 선호하는 잘못된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4-5]와 같이 서울에 비해 지방의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장 가동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 광주, 강원, 경북, 경남은 가동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5. 공연장별 가동률

구분		공연장 수	가동률 평균
전체		812	48.8
지역별	서울	276	61.7
	부산	33	53.4
	대구	32	45.4
	인천	35	46.9
	광주	17	37.3
	대전	22	45.6
	울산	10	48.7
	경기	126	41.7
	강원	42	38.4
	충북	22	41.8
	충남	38	40.4
	전북	34	45.3
	전남	29	40.7
	경북	29	29.6
경남	51	37.4	
제주	16	52.1	
설립주체	중앙정부	16	46.9
	광역자치단체	75	45.6
	기초자치단체	330	38.1

\* 자료 : 문화관광부,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2007, p106~107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공연 횟수가 많아 실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나 수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이나 지역으로만 자격증 취득자가 몰리고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광주, 강원, 충북 등의 지역은 의무배치 기준에 부합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연 횟수나 실무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문제가 있다. 따라서 객석 규모에 따른 일괄적인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공연장의 설비 및 기자재의 규모, 공연 및 행사의 횟수 등 공연장 가동률, 공연장의 예산 규모 등 현실적인 방안을 구분화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8].

2)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처우 개선

자격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있어 자주 언급되었던 것이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전문기술자라고 부르기 어렵다. 사회적

으로 인정받는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인정 요소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능력과 가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금전적 대가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임금 인상이나 자격수당 등 외적인 보상이 없고 일에 대한 자기 만족도나 자부심은 높아지지 않았다. 본 제도가 기술 인력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보다는 극장에서 근무하기 위한 강제조건으로 존재하는 제도로서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무대예술 전문 인력 자격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무대기술 분야 인력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이 실시한 규제 순응도 조사에서도 현장 종사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무대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자격증 취득자나 관계자의 89%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나머지 11%의 반대 이유는, 자격증의 보유가 실무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자격증이 정당한 대우나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사회적 제도의 틀 안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자격제도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자격취득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부정적인 규제로서 작용하였다면, 종사자들에게 추가의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정책으로서 정착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조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위법인 자격기

본법 제30조에서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의무조항을 넣음으로써 자격 취득자를 제도 안에서 보호하고 되어야 한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역시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으로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을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자치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법률적 틀 안에서 무대예술전문인을 지원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대 제도를 제도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V. 결론

공연예술에 있어 보조적인 입장에 있었던 “무대예술전문인”이 공연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분화, 전문화되어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고 있으며 일반인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무대예술전문인을 단순한 기술인으로만 볼 수 없으며 무대예술을 재창조하는 예술가로서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업과 연계한 국가자격제도의 틀 안에서 타 자격제도와 비슷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만 자격제도로서의 본래의 목적과 부합될 것이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양성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무대예술전문인의 경우와 같이 특정 분야에 기술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는 영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희소성에 기초하는 인적자원의 가치를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시행초기에 자격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행되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과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지금까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수차례 문제로 제기된 검정합격인정제에 대한 폐해를 없애지 않고 경과조치 규정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았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자격제도의 신뢰성과 공신력에 문제를 가져오고 무대예술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첫 자격제도로써,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와 걸맞은 운영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공연작품의 질적 완성도 제고와 무대예술 분야의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지만, 국가의 자격제도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격제도가 공연예술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예술경영학적 측면에서 측정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에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자와 공연장,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자, 나아가 공연예술계에 다시 한 번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재고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격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검정기준과 검정내용을 재개발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로 설정된 검정내용은 단지 검정기준 설정과정에 적합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검정기준은 낡은 것이 되기 쉬우므로 검정기관에서는 업무내용의 변화주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기간을 두고 검정기준의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과도기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신뢰와 공신력 있는 제도로써 정착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 제도를 관리·감독하고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정기관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현직 종사자와 공연장 운영자, 예술가 등 문화예술 전문 인력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희선, “무대조명 III”, 교보문고, pp.43-49, 2007.
- [2] 구근희, 김상현, “무대기계 II”, 교보문고, pp.23-37, 2007.
- [3] 신일수, “무대기술”, 교보문고, pp.15-55, 2005.
- [4] 김동희,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71, 2007.
- [5] 이영두, “문화예술전문직(예술경영인)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8집, pp. 3-18, 2005.
- [6]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개선방안 연구”, pp.3-60, 2006.
-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문예연감”, pp.406-432, 2008.
- [8] 한국노동연구원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 pp.8-131, 2009.

- 2010년 : 동국대학교 문화 예술대학원 예술경영석사 <관심분야> : 문화예술 및 LED조명 시스템

임 지 원(Jee-Weon Im)

정회원



- 1991년 :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사)
- 1993년 : 한양대학원 전기공학과
- 석사과정 졸업(공학석사)
- 1998년 : 일본 와세다대학교 전기 공학과 박사과정 졸업(공학박사)
- 1998년 : 일본 와세다대학교 이공학연구과 조수
- 현재 : 국제대학 철도전기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문화예술 및 전기기계 시스템

저 자 소 개

이 장 원(Jang-Weon Lee)

종신회원



- 1988년 :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사)
- 1990년 : 호서대학원 석사과정 전기공학과(공학석사)
- 1998년 ~ 2002년 : 명지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강사 역임. 동아방송대학 영상제작과 겸임교수 역임
- 2009년 ~ 현재 :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 제4대 총동문회장
- 2009년 ~ 현재 : 대전보건대학 방송제작과 겸임교수
- 2010년 ~ 현재 : (주)스타엘브이에스 CEO
- 2010년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연기학과 외래교수
- 2010년 : 호서대학원 박사과정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조명시스템)
- 현재 : 교회건축 멀티미디어 협회 회장